

선박 말소등록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2일
소유자	성명(법인명)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	
	주소(도로명) 및 연락처(전화번호 등)		
선박	선박의 명칭	선박번호	
		IMO번호	
	선박의 용도	호출부호	
	선적항	총톤수 톤	
말소의 사유	[]침몰 []해체 []수출 []그 밖의 사유		
말소의 구분	[]선주 말소 []직권 말소		
비고(말소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)			

「선박법」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박의 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(서명 또는 인)

지방해양수산청장(해양수산사무소장)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「선박법」 제22조제1항제1호·제3호 및 제4호의 경우: 말소등록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. 「선박법」 제22조제1항제2호의 경우 가. 선박등기부 등본(등기대상 선박만 해당합니다) 나. 압류권자·저당권자·공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의 등본(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200원
지방해양수산청장 (해양수산사무소장) 확인사항	수출신고필증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(해양수산사무소장)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지방해양수산청장(해양수산사무소장)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수출신고필증(해당 선박의 수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)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
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